

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

[※ 빈 칸 없이 모두 기재하셔야 처리 됩니다.]

제출: 부천고용센터 팩스 0508-8230-0151

귀사의 신규 채용 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합니다. (허위 작성시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.)

1. 근로자 현황 (※근로자 본인이 작성, 특히 사업장이 파견, 용역업체인 경우 실제 근무 장소 정확히 기재)

성명	생년월일	①실업급여 받기 전 퇴사한 사업장 (이직 전 사업장)		
		①이직 전 회사명	①실제 근무지 주소	①대표자명
		②실업급여를 받던 중 최초 재취직한 사업장		
		②재취직 회사명	②실제 근무지 주소	②대표자명

※ 아래부터는 사업장(인사담당자 등)에서 확인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청구인 본인 작성 금지]

작성자 :	직위 :	전화번호 :
		팩스번호 :

2. 채용관련 현황 (해당사항 확인 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.)

채용경로	☐ 고용센터 소개 ☐ 지인 소개 ☐ 신문, 일간지등 ☐ 인터넷 구인광고 ☐ 기 타 ()						
채용근로자 담당업무							
최초 면접일		채용통보일		입사일자		퇴사일자 (퇴사한 경우)	

3. 귀사와 이직 전 사업장과의 관계 (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체크해 주십시오.)

확인항목	해당	비해당
- 귀사는 청구인의 이직 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주입니까? (동일 사업주 여부)	☐	☐
- 귀사는 청구인의 이직 전 사업장을 인수·합병·분할하였습니까? (관련 사업주 여부)	☐	☐
- 귀사는 청구인의 이직 전 사업장으로부터 영업을 양도·양수 하는 등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해당합니까? (관련사업주여부)	☐	☐
- 청구인의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(예시: 가족관계, 해당없음)		

※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의거 이직 전·후의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
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 업 장 명 :

사업자등록번호 :

대 표 자 명 :

(직인)